

2025. 3. 26.(수)

공단본부 회의실

양산시시설관리공단 노사협의회 제69차 회의

회 의 자 료

☐ 추진근거

- 「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」 제12조(회의)
- 양산시시설관리공단 노사협의회 규정 제11조

☐ 개 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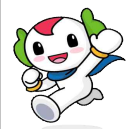
- 일 시 : 2025. 3. 26.(수), 11:00 ~
- 장 소 : 공단본부 회의실
- 안 건
 - 보고사항: 전 회차(제68차) 건의사항(2건) 외 2건
 - 의결사항: 개인성과관리(MBO) 시행관련 1건
 - 건의사항: 임시휴무일 지정에 따른 보상휴가 보장 1건



양 산 시 시 설 관 리 공 단
(노 사 협 의 회)



2025년 1/4분기 [제69차] 노사협의회



I 관련 근거

- 「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」 제12조(회의)
- 양산시시설관리공단 노사협의회 규정 제11조

II 개 요

- 실시차수 : 제69차 2025년 1/4분기 노사협의회
- 일 시 : 2025. 3. 26.(수), 11:00 ~
- 장 소 : 양주문화체육센터 회의실(공단본부)
- 안 건
 - 보고사항
 - 2024년 경영평가 보고서 제출
 - 양산문화재단 설립에 따른 직원 고용승계 관련
 - 부재 직원을 대신하여 업무 수행시 보상 방안 마련
 - 공단 연간 업무·행사 등 계획 공유
 - 의결사항
 - 개인성과관리(MBO) 시행 관련
 - 건의사항
 - 임시공휴일 설정에 따른 직원 휴무일 보장

III 보고 사항

- 2025년(2024년 실적) 경영평가 보고서 제출
 - 2024년 실적에 대한 경영평가 보고서 제출 완료(2025. 3. 21.)
 - 경영관리(50점) / 경영성과(50점)
 - ※ 2025. 4. 17.(목) 본심사(비대면 Zoom) (양산, 원주, 부여, 정선)

□ 양산문화재단 설립에 따른 직원 고용승계 관련

- 2025. 7. 양산문화재단 설립에 따라 양산문화예술회관 및 쌍벽루 아트홀은 문화재단으로 위수탁 변경될 예정임
- 이에 따라 시설을 운영할 직원에 대하여 공단에서 문화재단으로 전적할 직원에 대하여 파악중에 있으며 28일까지 시로 통보 예정임

□ 고용승계내용

가. 대 상 자 : 일반직 직원

나. 고용승계내용 : 직원의 직급, 임금수준, 근속기간, 인사사항 등 전반

다. 임금 및 복리후생 : 양산시시설관리공단과 동일

라. 성 과 급 : 2025년 ~ 2027년 평과급에 한하여 양산시시설관리공단 평과급과 동일하게 지급하고, 평가 등급은 “A” 로 확정(2028년 성과부터는 재단 평가급 지급 방식으로 변경)

마. 퇴직금 : 고용승계에 따른 퇴직금 승계(희망자에 한하여 정산 가능)

□ 부재 직원을 대신하여 업무 수행시 보상 방안 마련

- 직원의 휴직등으로 인해 부재가 발생 할 경우 업무를 대신하는 직원에 대한 「업무 대행 수당」 신설
 - ⇒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및 지방공기업 예산편성 기준에도 다양한 사유로 직원이 부재되는 경우 월 20만원내에서 업무대행수당으로 지급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점을 양산시에 전달하였으며, 이에 대한 의견을 요구함.

□ 공단 연간 업무·행사 등 계획 공유

- 공단에서 주최·주관하여 계획하거나, 진행하는 행사에 대한 연간 계획을 일정표로 작성하여 전 사업팀 공유
 - ⇒ 연간일정표 공유를 통하여 공단에서 추진 예정인 사업, 행사 등의 일정을 미리 쉽게 파악하여 원활한 업무추진에 활용

IV

의결 사항

□ 개인성과관리(MBO) 시행 관련

- 직원의 근무평정시 실적평정 50%를 반영하는 것으로 인사규정 (시행내규)이 2025. 1. 15. 변경되어 2024년 하반기 근무평정부터 근무실적 평정을 적용하였고, 2025. 3. 개인별 성과관리 계획서도 작성을 완료하였음
- 성과관리 계획서 작성을 통하여 연간 개인별 업무에 대하여 실적 관리 함으로써 공단 경영목표 달성과 함께 개인별 성과에 대하여 평가하게 되었음
- 이는, 2022년 경영평가 지적사항에 따라 시행한 개인성과관리 (MBO)의 형태와 유사하여 중복으로 관리하는 것은 효율적이지 못하여 2025년부터 폐지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됨

V

건의 사항

□ 임시공휴일 설정에 따른 직원 휴무일 보장

- 「일·월 휴무 사업팀 공휴일 대체휴무 처우개선」으로 지난 2023년 10월부터 대체공휴일에 대하여 1일을 휴일을 보장하고 있으나, 임시공휴일이 월요일로 지정되는 경우 일·월 휴무 사업팀에서는 대체공휴일처럼 1일의 휴무를 사용 할 수 없음
- ⇒ 임시공휴일이 월요일로 지정되는 대체공휴일처럼 1일의 휴무일을 보장해 주었으면 좋겠음.

끝.